NASC News Letter

Volume. 10

www.nas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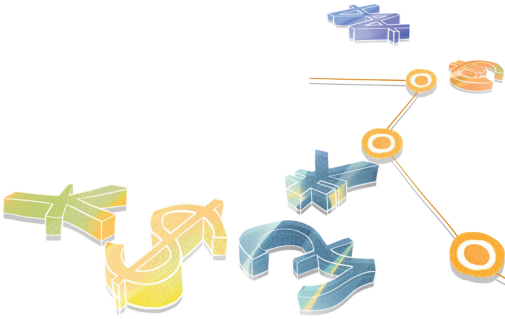

국가회계기준센터 창립2주년을 맞이하여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오피니언

공지사항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선도합니다.

www.nasc.or.kr

NASC News Letter Volume. 10
www.nas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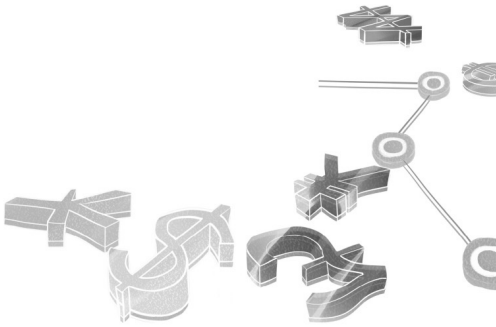

INDEX

국가회계기준센터 창립2주년을 맞이하며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오피니언

공지사항

NASC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기획재정부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01 NASC

〈국가회계기준센터 이전 및 창립2주년 기념 세미나〉

국가회계기준센터 창립2주년을 맞이하며

편 호 범 국가회계기준센터 소장

올해는 지난 9월 27일에 국가회계기준센터 이전과 창립 2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어 많은 내외귀빈 여러분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재무제표가 올해 최초로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발생주의 도입근거법인 국가회계법이 제정되고 4년 여만에 이루어낸 큰 발돋움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5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정부에 도입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공식적으로 국가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국가재무제표 작성 및 국회 제출이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 까지는 크게 조명 받지도 못하는 어려운 업무임에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제도를 시행해 온 기획재정부 담당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초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제도가 정착 및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이러한 선진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10년 7월 26일에 개소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주도 아래 그간 기틀을 잡아가며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도왔습니다.

국가회계기준센터 창립 당시를 돌아보면 14명이라는 작은 인원으로 '11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및 국회 제출이라는 쉽지 않은 목표가 주어진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정부관계자, 학계, 실무자 등의 의견을 모아 회계기준을 하나하나 정비해 갔으며, 중앙관서 재무제표 및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실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계기준 완비를 위해 연금회계준칙 마련과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가격평가 방안을 마련했던 것,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각종 세미나 개최 및 교육 참여와 재무제표 오류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중간점검 실시 등 많은 노력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1조 달러의 무역국으로 경제력 10위권 내에 있는 나라답게 이에 걸맞는 회계제도를 운영해 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회 각 부문에 있어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국가경제 발전에 있어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달은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가 시행하고 있었던 단식부기 방식으로는 정부회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학계나 시민단체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만큼 올해 첫 도입한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잘 정착시켜 국가 투명성 향상, 나아가 국가 신인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발생주의 제도 수준 및 활용 정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모든 국가기관들이 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 하며,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지금과 같이 이러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2012. 9. 27

02 NASC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윤 송 이 선임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부
Tel_02.3149.7558 / e-mail_ songihyoon@kicpa.or.kr

01 D-Brain 시스템 개선회의 참석 (9.10 / 9.13 / 9.20)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단과 공동으로 D-Brain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인 국가회계기준센터 결산팀은 9월 중 3차례에 걸쳐 D-Brain 시스템 개선 업무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감사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중앙관서의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 중 주로 중간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였다.

02 국가회계기준자문위원회 개최 (9.24 / 10.24)

국가회계기준센터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센터 내 자문기구인 국가회계기준자문위원회(위원장 전중열, 서울과학기술대학 경영학과 교수)가 9월 24일, 10월 24일 국가회계기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9월 24일에 개최한 제9차 자문위원회에서는 "국고금회계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표시방법"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적립금 처리방법", "벌금수익 인식시기에 대한 쟁점사항 및 향후 처리방안" 등 3개의 안건을 보고하였고, 10월 24일에 개최한 제10차 자문위원회에서는 "융자회계준칙 주요 쟁점사항 및 향후 처리방안"과 "내부거래제거 대상 제외(안)" 등 3개의 안건을 보고하고 센터 업무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03 「제24회 국가재정관리에 관한 국제 콜로퀴엄」 참석 (9.25~28)

국가회계기준센터(정지웅 연구원 외 1명)는 9월 25일~28일 일정으로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제24회 국가재정관리에 관한 국제 콜로퀴엄」에 참석하였다. 이번 콜로퀴엄에는 북미・유럽・아시아 등 각국의 재정관리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여 "변혁을 통한 재정관리 리더십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사례발표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한국의 정부부문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사례를 참석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였으며, 이에 참석자들은 재정관리 부문의 발전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04 「국가회계기준센터 이전 및 2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9.27)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9월 27일 '국가회계기준센터 이전 및 2주년 기념세미나(융자보조원가충당금 회계처리의 정책적의의 및 발전방향)'를 개최하였다.

중앙부처, 기금 결산담당자 및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회계기준센터 활동내역보고」(발표:김은영 부장) 및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회계처리의 정책적 의의 및 발전방향」(발표: 김상노 부장)에 대해 발표하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05 「벌금수익 실태파악을 위한 부처실무자 회의」 개최 (10.8)

국가회계기준센터는 10월 8일 국가회계기준센터 대회의실에서 「벌금수익 실태파악을 위한 부처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부처 담당자와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이 참석하였으며, 각 부처별로 발생한 '벌금수익의 현황, 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10월 12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벌금 등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06 2012회계연도 정부결산 일선관서 교육 (10.30~11.8)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는 2012회계연도 정부결산 일선관서 교육을 전국 1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7일간(10.30~11.8) 실시하였다. 본 교육에는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 국유재산과, dBrain 운영단 및 국가회계기준센터가 공동으로 강의에 참여하였으며,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재무회계・결산교육"의 교재를 작성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예산과목과 재무계정 과목의 연계, 결산오류사례 및 발생원인, 오류발생시 수정・보완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07 정기인사(선임연구원) 승진임용 (9.1)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정기인사(9월)를 맞아 연구원 6명에 대하여 선임연구원으로 임용하였다.

이번 정기인사로 정지웅(공공기관), 박윤진(GFS), 윤송이(원가), 김명남(결산), 오미경(부채), 배재철(GFS) 이상 6명이 선임연구원으로 승진하였다.

08 국가회계기준센터 사무실 이전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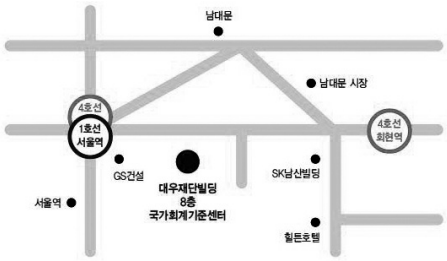

국가회계기준센터는 9월 10일 종전 한국공인회계사회관 3층에서 서울역 인근 대우재단빌딩 8층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였다. 이번 사무실 이전으로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을 갖추어 각종 위원회 및 회의 등을 개최하는데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기관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향후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09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구원 신규 채용 (10.15)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10월 15일 정부회계 연구를 수행할 연구원 3명을 신규채용하였다.

이번 신규 채용에는 국내 및 해외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지니고 회계법인 및 관련기관 등에서 수년간 회계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지고하였다. 신규 채용과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면접에는 특히 관련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정부회계분야에 대한 남다른 도전정신이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채용으로 국가회계기준센터는 편호범 소장 이하 연구원 22명, 행정인력 2명으로 총 25명의 인력으로 운용된다.

국가회계제도 동향

03

김 명 남 선임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재무통계부
Tel_02.3149.7572 / e-mail_ ssoren@kicpa.or.kr

01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10.12 / 10.26)

국가회계처리지침 개정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10월 12일, 10월 26일 국가회계기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0월 12일에 개최된 위원회(위원장 김경호, 홍익대학교 교수)에서는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 및 2012년 국가회계제도 개선방안 보고", "벌금 등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5개의 안건이 다루어졌고, 10월 26일에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현행 회계처리지침 개정사항(안)",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회계처리방안"의 2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소위원회에는 민간전문위원(위원장 김경호 교수외 5인),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장문선 팀장외 2인) 및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구원(재무통계부장 김상노외 6인)이 참석하였다. 또한 법무부,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도 참석하여 부처의견을 개진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안건이 의결되었다.

02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자문회의 개최 (10.22)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산출방안에 대한 자문회의가 재정, 회계, 조세, 보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2일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금기금에 공통 적용할 합리적인 할인율 산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산정방식을 계단형 방식에서 보간법으로 변경하는 방안" 및 "2012년부터 신규 발행된 국채 30년물의 수익률을 할인율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03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에 대한 설명회 개최 (9.26)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과 국가회계기준센터 결산팀은 9월 26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D-Brain시스템을 사용하는 재무결산 대상 회계·기금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및 국회 제출 일정 준수를 위하여 대상기간(2012.1.1.~9.30) 동안 내부거래 제거, 계정과목 명세서 검토 등 주요 항목에 대하여 중간점검을 수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들 부처의 소관 국가회계실체(일반회계 45개, 특별회계 13개, 기금 28개)는 중간점검을 수행하고 검토결과보고서를 11월 2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외국회계제도 동향

04 NASC

이 혜 진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재무통계부
Tel_02.3149.7566 / e-mail_ whateverhj@kicpa.or.kr

01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의 동향

IPSASB, IPSAS 검토의견서와 GFS 보고지침 발행

10월 18일,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의견수렴 목적으로 검토의견서(Consultation Paper)와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및 정부재정통계(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보고지침을 발행했다. 검토의견서는 IPSASB와 통계 관련기관(IMF나 Eurostat 등 국제기구)의 대표자, 각국 대표자(브라질,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로 구성된 T/F 팀이 마련했다.

검토의견서는 GFS 보고지침과 IPSAS의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 하에, GFS 보고지침과 IPSAS의 차이를 개관하고 IPSASB나 통계 관련기관이 이러한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한다.

또한 검토의견서는 정부가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IPSAS 재무제표와 GFS 보고서를 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의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GFS 보고서의 작성 시간·비용·노력 절감 등 많은 이점이 있다. 또한 GFS 보고서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출처자료에도 연계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주의에 기초한 감사받은 재무보고 자료를 활용하면 GFS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품질이 크게 개선되고 그에 따라 정책입안의 수준도 향상된다. 유럽의 국채위기를 생각해보면 질적 수준이 우수한 원본자료의 확보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알 수 있다.

IPSASB의 Andreas Bergmann 위원장은 "정부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와 일반정부부문 재정통계 모두 정부 재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검토의견서는 IPSAS에 기초한 재무보고서와

GFS 보고서 이용자 모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두 보고서 작성지침의 간극을 보다 더 좁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검토의견서에 제시된 실무적 제안을 통해 정부는 두 보고서 작성지침의 차이점을 관리함으로써 동일한 통합재무정보시스템으로부터 IPSAS 재무제표와 GFS 보고서의 기초자료를 효율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02 미국 공공부문 회계 동향

GASB, 새로운 연금 기준서 제정

2012년 8월 2일, 미국 지방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주·지방정부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서를 제정했다. GASB는 해당 두 기준서를 지난 6월 25일에 승인했으며, 현재 GASB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준서 제67호 "연금제도의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 for Pension Plans)"는 연금제도 대부분의 재무보고와 관련된 기존 지침을 개정한다.

기준서 제68호 "연금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for Pensions)"는 공무원에게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정부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재무보고 요건을 제·개정한다.
GASB 홈페이지에는 새 기준서 관련 보도 자료와 알기 쉬운 해설 자료도 게재되어 있다.

기준서 제67호는 2013년 6월 15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적용되며, 기준서 제68호는 2014년 6월 15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GASB는 두 기준서의 조기 적용을 권장한다.

GASB, 주·지방정부의 금융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서(안) 제정

6월 25일, 미국 지방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비교환 금융보증을 제공하는 주·지방정부와 채무보증을 제공받는 정부에 금융보증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기준서(안)를 제정하여 대중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기준서(안)는 공개초안(Exposure Draft) "비교환 금융보증거래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for Nonexchange Financial Guarantee Transactions)"에 포함되어 있다.

비교환 금융보증은 보증기관(보증을 제공하는 정부나 조직)이 그에 상당하는 대가없이 신용을 확대 및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적시 상환을 통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은 채권자에게 대신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금융보증의 결과 보증기관은 정부 자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을 부담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정부 채무는 장래에 감소한다.

기준서(안)의 규정에 따르면 기타 기관 및 정부에 비교환 금융보증을 제공하는 주・지방정부는 계약 상 채권자에게 실제로 상환의무를 이행해야할 가능성이 "50% 이상일 때" 재무제표에 부채를 기록해야 한다. 기준서(안)의 추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정부 보증기관은 보증채무의 상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50%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질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채무를 발행한 채무자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는지, 파산 및 금융재조정 절차를 개시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보증기관에 상환해야 하는 정부 채무기관은 법률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부채를 계속 보고해야 한다. 법률적 관계가 해소되면 정부는 채무 탕감 결과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 정부 보증기관과 정부 채무기관은 비교환 금융보증의 금액과 성격을 공시해야 한다.

GASB의 Robert H. Attmore 위원장은 "정부 간 금융보증계약이 늘어나고 보증기관의 채무 변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관적인 인식 및 공시 지침이 필요해졌다. 이번 기준서가 제정되면 재무제표 이용자는 금융보증을 통해 보증기관이 처하게 되는 리스크와 주・지방정부 채무기관이 제공 받는 신용확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자는 보증기관의 채무변제 확률을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본 기준서(안) 개정사항은 2013년 6월 15일 이후 개시하는 회기에 적용되며, 기준서의 조기 적용이 권장된다. 금융보증을 통해 지급 및 수령한 누적금액에 대한 공시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기타 조항은 소급 적용된다.

03 영국 공공부문 회계 동향

2010~2011년도 통합재정보고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 발행

7월 12일, 영국정부는 2010~2011년도 통합재정보고서의 감사받지 않은 요약서를 발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공공재정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을 광범위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국정부는 예산책임국(OBR: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의 2012년 재정건전성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발간했다. 통합재정보고서는 2011년 3월 31일 현재 자산과 부채를 간략

히 기록한 반면, OBR 재정건전성보고서는 공공재정부문이 향후 50년간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지 예측한다.

OBR 재정건전성보고서는 고령화 등 인구 변화추이의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50년간의 공공재정을 살펴본다. 이 보고서는 공공부문 연금개혁이 가져온 절감효과를 공식적으로 예측한 첫 번째 보고서로, 정부의 개혁을 통해 공공부문 연금서비스 원가가 향후 50년 동안 40%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2061~2062년도의 공공부문 연금서비스 순원가는 정부 개혁이 없었다면 GDP의 1.5%를 차지하겠지만, 개혁을 통해 0.9%까지 낮아진다.

Danny Alexander 재무부차관은 "영국정부는 재정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재정의 장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OBR 재정건전성보고서를 통해 공공재정의 장기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정부의 개혁노력으로 인해 공공부문 연금제도에 지출될 총액은 지난 40년간의 장기 평균 총지출액과 비슷할 것이다. 2061~2062년도까지 순지출액의 40%가 절감되면 다른 서비스에 조달할 수 있는 자금적 여유가 생긴다. 재무부는 현재 GDP 수준으로 봤을 때 향후 50년간 약 4,300억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를 통해 지난 주 합의가 납세자에게만 이득이 아니라, 모든 연금가입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는 가능한 최선의 연금제도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부문 근로자에게도 이득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 언급했다.

04 호주 공공부문 회계 동향

호주회계기준위원회(AASB), 호주회계기준(AAS) 제・개정

2012년 6월 29일, 호주회계기준위원회(AASB: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다섯 건의 호주회계기준(AAS: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제・개정안을 승인했다.

AASB 2012-2 AAS 개정 : 공시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AASB 2012-3 AAS 개정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AASB 2012-4 AAS 개정 : 정부융자
AASB 2012-5 IASB의 2009~2011년도 IFRS 연례개선안(Annual Improvements 2009-2011)을 반영한 AAS 개정
AASB 1048 해석서 (개정)

이번에 제・개정된 5개 기준서는 AASB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ASB 2012-2, AASB 2012-4, AASB 2012-5는 2013년 1월 1일부터 혹은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며, AASB 2012-3은 2014년 1월 1일부터 혹은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AASB 1048은 2012년 6월 30일에 혹은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 기준서의 조기 적용이 허용된다.

개정 목적

AASB 7 "금융상품: 공시(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를 개정한 AASB 2012-2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상계계약의 효과 혹은 잠재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상계계약에는 회계실체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와 관련한 상계청구권(rights of set-off)이 포함된다.

AASB 132 "금융상품: 표시(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의 적용지침인 AASB 2012-3은 AASB 132의 상계기준을 적용하면서 야기되는 비일관성 문제를 해결한다. 특히 "현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쇄청구권을 보유"라는 문구의 뜻을 명확히 하고, 일부 총액결제(gross settlement)는 순액결제(net settlement)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ASB 2012-4는 AASB 1 "AAS의 최초 적용(First-time Adoption of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에서 규정하는 AAS 소급적용 규정의 예외를 추가한다. 즉, AAS를 처음 도입하는 실체는 AAS로의 전환일에 존재하는 정부융자(시장이자율 미만의 융자 포함)에 대해서는 AASB 1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혹은 AASB 9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과 AASB 120 "정부 보조금의 회계처리 및 정부보조의 공시(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규정을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AASB 2012-5는 2009~2011년도 IFRS 연례개선안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동 기준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다루고 있다.

- AASB 1의 반복적용을 허용
- 실체가 3개년 비교대차대조표를 제공하는 경우 비교정보 규정을 명확히 함 (AASB 10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ASB 1048은 호주의 AAS 해석지침(Australian Interpretations)을 IASB 해석지침과 동일한 부분과 상이한 부분으로 구분한다. 회계실체는 AASB 1048의 범위 내에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관련된 호주 해석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AASB 1048은 2010년 6월에 발간된 AASB 1048에 대한 제・개정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05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 기금회계처리지침 -

임 정 혁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부
Tel_02.3149.7553 / e-mail_ rau438@kicpa.or.kr

01 머리말

국가회계처리의 기본 단위가 되는 국가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특성에 따라 크게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로 구분된다. 사업형 회계는 다시 기금과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 중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1]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회계실체를 말하는데, 이들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운용 중인 기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결산대상 기금의 총 개수는 모두 64개이며 이들이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시킨 총비용은 124.2조원, 총수익은 122.5조원으로 집계되어 기금 전체적으로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게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비용에서 교환수익을 차감한 값인 재정운영순원가가 29조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금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원가를 교환거래를 통해 모두 회수하지 못하고 비교환수익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교환수익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연금과 부담금이며, 출연금과 부담금은 공히 기금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재원마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이들에 대한 회계처리를 기금회계처리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02 출연금 및 부담금 회계처리

먼저 출연금은 국가가 재정사업 등을 위탁한 기관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령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금전적 재산을 의미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한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기금 입장에서 비교환수익으로 인식하는 출연금과 부담금은 각각 '국가의 재정사업을 맡아 수행하는 기금이 법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수취한 출연금'과 '기금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하여 수취한 부담금'이 될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기금회계처리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연금과 부담금은 개별법에서의 명목상 출연금 및 부담금과 다르다는 것이다. 출연금의 경우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출연금이 제외되며,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부담금뿐만 아니라 동법 상 출연금, 분담금, 예치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보다 상세한 구분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출연금			부담금	기 타
자발적 협약 등에 의한 출연금	타 법령에 의한 출연금	부담금관리기본법 상 출연금	부담금관리기본법 상 부담금	분담금, 예치금
기금회계처리지침 적용 대상 출연금		기금회계처리지침 적용 대상 부담금		

1. 출연금 회계처리

기금은 여러 법령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회계실체나, 금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단,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출연금은 부담금으로 보아 뒤에서 다룰 부담금 회계처리를 따라야 한다.

기금회계처리지침에서는 기금이 출연금을 수령할 때 수행할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출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출연금을 운영비용 등 충당에 사용하는 경우 : '비교환수익 등' 으로 처리

기금이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그 목적사업의 사업비용 등에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을 받을 때 재정운영표 상 비교환수익 등 항목으로 처리한다. 지침에서는 재원이 소진된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고 있다.

① 사업비용 충당 (대표적으로 보험관련 기금)
② 관리, 운영비 등에 충당
③ 연구개발 관련 비용에 충당

2) 출연금을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순자산증감'으로 처리

출연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자산 매입이나 차입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연금 수령 시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증감 항목으로 처리한다. 출연금이 다음 사례와 같이 주로 자산이나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조성된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익이 아닌 순자산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① 시설 신설 및 증설 등 자본적 지출
② 자산매입 (부실채권, 유가증권 등의 매입) 또는 융자금의 재원
③ 신용보증, 채무보증의 재원
④ 차입금 및 이자 상환의 재원

기금회계처리지침에서 이와 같이 출연금 수령 시 회계처리를 출연금의 용도가 재원을 소진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령한 출연금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일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금의 성과가 왜곡 표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금이 자산을 취득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출연금을 수령하는데 이를 모두 수익으로 반영하는 경우 재정운영결과에서 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기금의 성과가 과대평가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재원이 유지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익이 아닌 순자산항목으로 처리하여 수익·비용의 대응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 출연금 회계처리 예시 〉

구 분		차 변		대 변	
일반회계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을 기금사업의 **운영비용 등 충당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	한국은행국가예금	××
	기금	현금및현금성자산	××	일반회계전입금 (재정운영표 상 비교환수익 등 항목)	××
일반회계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을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	한국은행국가예금	××
	기금	현금및현금성자산	××	출연금의증가 (순자산변동표 상 기타 순자산의 증감 항목)	××

2. 부담금 회계처리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는 부담금을 국세나 기부금 등과 함께 비교환수익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제29조에서는 이러한 부담금의 수익 인식시기를 청구권 확정시점으로 규정

하고 있다. 기금 입장에서는 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금 등[2)]을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할 때 재정운영표 상 비교환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 부담금 회계처리 예시 〉

구 분	차 변		대 변	
부담금에 대한 부과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미수부담금수익	××	부담금수익 (재정운영표 상 비교환수익 등 항목)	××
부과고지된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	현금및현금성자산	××	미수부담금수익	××

03 적립금 및 준비금 회계처리

64개 기금들 중 일부는 보험 및 보증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보험 또는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기금들의 경우 사고의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금은 준비금 및 적립금 적립을 통해 보험료 등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을 인식함으로써 수지의 불균형을 예방하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담보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금회계처리지침에서는 보험 및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기금들이 따라야 할 준비금 및 적립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침 적용 대상인 준비금 및 적립금은 미래의 지급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적립한 금액이다.

기금회계처리지침은 적립금과 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기금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①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의 경우

보험사업이란 농어업재해재보험, 무역보험, 우체국보험 등과 같이 국가회계실체가 개인이나 법인에게 특정한 위험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사업을 제외한 개념이다.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기금은 그 설치 근거법에 규정된 적립금과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환입하고 있다. 적립금 및 준비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여기서의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정의하는 바와 같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부담금, 분담금, 기여금, 출연금 등을 말한다.

구 분		차 변	대 변
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계약자배당금준비금 장기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시	기타이전비용 (보험비용) ××	보험충당부채 ××
	환입시	보험충당부채 ××	기타수익 (충당부채환입)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적립시	기타비용 (미경과보험료전입액) ××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
	환입시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	기타수익 (미경과보험료적립금환입액) ××

상기 준비금 및 적립금 중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미래의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성격이므로 이를 보험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하지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보험료수익을 이연시키기 위한 계정과목으로서 수익의 이연성격 계정이므로 보험충당부채가 아닌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로 인식한다.

준비금 등을 적립할 때 사용하는 비용 계정과목과 환입할 때 사용하는 수익 계정과목 역시 부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충당부채의 경우 증가될 때 기타이전비용 중 '보험비용', 환입될 때 기타수익 중 '충당부채환입' 계정과목을 쓰지만,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의 경우에는 각각 기타비용 중 '미경과보험료전입액'과 기타수익 중 '미경과보험료적립금환입액'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② 사회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의 경우

사회보험사업이란「고용보험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실업, 업무상 재해 등의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회계실체 즉,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차 변	대 변
책임준비금	적립시	기타이전비용 (사회보험비용) ××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기타부채) ××
	환입시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기타부채) ××	기타수익 (기타부채환입) ××

「보험회계준칙」에서는 이러한 사회보험사업과 관련된 준비금을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중 기타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책임준비금은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로 계상된다. 적립

또는 환입 시 비용 및 수익 계정과목은 각각 사회보험비용 및 기타부채환입이므로 앞서 보았던 보험사업에서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과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의 경우

보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금 회계실체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는데,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대위변제준비금,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준비금 등의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적립된 준비금은 재정상태표 상 보증충당부채로 인식되며, 준비금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기타이전비용 중 보증보조비용으로 처리하고 감소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환입으로 하여 기타수익으로 처리한다.

구 분		차 변		대 변	
책임준비금	적립시	기타이전비용 (보증보조비용)	××	보증충당부채	××
	환입시	보증충당부채	××	기타수익 (충당부채환입)	××

04 맺음말

지금까지 기금회계처리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출연금 및 부담금 회계처리, 준비금 및 적립금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금회계처리지침은 여러 가지 국가회계실체 중 기금 회계실체의 입장에서 지켜야 할 회계처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지침으로, 기금이 운용을 위한 주요 재원이 되는 출연금 및 부담금을 받을 때의 회계처리와 함께 보험 또는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이 적립하는 준비금과 적립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기금이 수령하는 출연금의 경우 그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수령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준비금 및 적립금의 경우 사업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계정과목의 분류가 달라진다는 점이 기금회계처리지침의 핵심이다.

06

오피니언

-「제24회 국가재정관리에 관한 국제 콜로퀴엄」참석 후기 -

정 지 웅 선임연구원 _ 공공기관팀 Tel_02.3149.7568 / e-mail_ jwng113@kicpa.or.kr
권 기 환 연구원 _ 자산팀 Tel_02.3149.7567 / e-mail_ kkhpark@kicpa.or.kr

01 개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미국과 캐나다 재무부가 공동주최하는 「제24회 국가재정관리에 관한 국제 콜로퀴엄(24th International Colloquium on Financial Management for National Governments)」이 개최되었다. 동 콜로퀴엄은 매년 미국과 캐나다를 번갈아 가면서 열리는데, 금번에는 '변혁을 통한 재정관리 리더십의 발전(Financial management leadership through transformation initiatives)'을 주제로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북미・유럽・아시아 등 각국 정부관계자를 비롯하여 민간 회계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국가재정관리 분야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02 발표주제 및 내용

9월 26일 오전에는 캐나다와 영국의 주요 재정관리 이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지출 감축, 효율성 및 재정 변혁 이니셔티브에 대한 업데이트' 및 '조달 및 자산관리 이니셔티브에 대한 업데이트'에 관한 주제발표 및 패널 토론을 가졌으며, 점심시간을 활용한 맥킨지 컨설팅의 '정부 지출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 특별발표 이후 같은 날 오후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부적절 지출에 대한 패널 토론'을 비롯해 미국과 오스트리아의 각국 재정관리 현황 소개가 이어졌다. 9월 27일에는 프랑스의 '재무정보의 표시 및 중간결산시스템 도입'에 대한 발표와 함께 '공통 재정시스템'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그 후 미국공공부문회계사회(Association of Govenment Accountants)의 특별발표가 있었다.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준비한 경제 전망에 대한 브리핑에 이어 같은 날 오후 및 9월 28일 오전까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및 유럽연합 등 각국의 예산·결산 현황, 장기재정추계 등 재정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03 발생주의 회계제도 관련 주요 논의사항

이번 콜로퀴엄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출 감축, 효율성 및 재정 변혁 이니셔티브에 대한 업데이트

이번 콜로퀴엄을 아우르는 주요 키워드는 다름 아닌 지출 감축 및 효율성 제고였다. 먼저 영국은 재정변혁프로그램(FTP: Finance Transformation Programme)을 통해 재정을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FTP는 2011년 1월에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정부 재정부문의 강화 및 근본적 변화를 통해 보다 상업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혁신적인 재정을 구축함으로써 재정을 의사결정의 핵심요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 전체 차원에서 FTP가 진행 중에 있으며 효과적인 리더쉽, 비용절감 문화, 전문가 의식 및 전문적 기능의 4가지 성공요소를 세워 집중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Top-down 예산편성을 통한 지출 감축을 시행 중에 있다. 1990년 후반까지는 비용절감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지출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조사하는 Bottom-up 방식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나, 각 프로그램의 비용절감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예산편성 기관, 즉 재무부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과도한 시간 및 역량이 재무부에 집중된다는 한계로 인해 Top-down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Top-down 예산편성을 도입함으로써 각 부처는 재무부로부터 일괄예산을 배정받게 되며 따라서 세부프로그램의 비용절감 가능성 확인은 각 부처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2. 조달 및 자산관리 이니셔티브에 대한 업데이트

캐나다는 통합 및 표준화를 통한 지원업무(Back office) 기능 축소 및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2012년도 예산안에서 제시된 경제사업계획(Economic Action Plan)은 캐나다의 경제 펀더멘탈의 강점을 보강하며 향후 직면하게 될 주요 위험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제시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정부는 각 기관/부처의 행정 및 운영기능을 통합 및 표준화하여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비영리법인인 연방조달청(Federal Procurement Agency)을 통한 조달 기능 개혁을

달성하였다. 연방조달청 설립 이전에 정부 각 부처는 자체 구매부서를 통해 독립적으로 조달을 수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공동구매시 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함에 따른 조달 기능의 전문성 결여 이슈가 제기되어 왔다. 연방조달청은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소유의 비영리법인으로 2001년 설립되어 연방정부 각 기관에 다음과 같은 무상 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유리한 가격 및 구매조건 확보를 위한 일괄 주문
- 가공비용 및 법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매기능 표준화
- 기본 계약조건 협상
- 요청이 있을 시, 기본 계약조건에 따른 경쟁입찰 구성

3. 공통 재정시스템 – 서비스 표준화, 셰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 및 지원업무(Back office) 기능

미국정부의 셰어드 서비스는 주로 재정관리, 조달관리, 인사관리, 출장관리 및 IT 분야에 제공되고 있으며, 셰어드 서비스를 통해 숙련된 전문가를 통한 효율성 제고, 표준화 모범 관행 및 프로세스를 통한 질적 개선, 중복 업무의 제거, 원가 절감 등을 달성하고 있다. 관리예산처(OMB) 회람서 A-127에서 셰어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개혁국(Office of Financial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에서 셰어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는 정부부문의 서비스 및 시스템 표준화를 통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부문 총지출의 88.2%는 SAP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미 서비스 표준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캐나다는 재정관리를 위한 공용 SAP 환경설정을 통해 정부부문 서비스 및 시스템 표준화를 실현시키려는 비전을 세우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셰어드 서비스 확대를 통한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즉, 예산 절감, 서비스 질적 개선, 프로세스 효율화 및 표준화 등의 실현을 위해 셰어드 서비스 확대를 추진중에 있다. 현재 연방조달청을 비롯하여 연방회계결산청(Federal Accounting Agency), 연방융자청(Federal Financing Agency), 연방IT센터(Federal Computing Centre), 연방법무청(Federal Law Office) 정부부문 셰어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4.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이번 콜로퀴엄은 재정관리라는 큰 주제 하에서 다양한 방법론들이 다루어졌으며, 따라서 국가결산도 재정관리의 한 부분으로 개괄적으로 다루어졌다.

먼저 미국은 정부통합 재무보고서(Governmentwide Financial Report Preparation) 작성 프로세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연방기관은 감사받은 업무 및 회계책임성 보고서, 재무보고서 및

시산표 등의 재무정보를 정부통합을 위한 공용 포맷으로 재구성하여 재무부 재무관리국에 제출한다. 작성된 통합 재무보고서는 감사원(GAO)의 감사를 받고, OMB의 재정추계 및 재무부 국고국의 분석자료 등을 추가하여 정부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한다.

다음으로 영국은 통합재정보고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의 특징, 발전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각 부처는 IFRS 기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되 중앙정부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하며, 통합재정보고서는 공공부문에 맞게 수정된 EU 채택 IFRS에 기반하여 작성하며 재무제표 표시는 민간부문과 유사하다. 현재 통합재정보고서에는 예산과의 비교 정보가 없지만, 향후 예산과의 비교 및 지출 분석 등을 포함하는 개선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중앙정부기관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EU는 IPSAS가 EU 전체의 공통 회계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중에 있다.

캐나다는 정부부문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의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보고서(Public Accounts)는 정부통합 재무제표 및 기타 법률 등에서 요구하는 추가정보로 구성되는데, 정부통합 재무제표는 캐나다 공공부문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부처 재무제표는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관리 및 집행하는 재원에 대한 회계책임성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캐나다 공공부문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다.

프랑스의 국가통합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며, 연말결산을 대비한 중간결산시스템(Interim Financial Statement)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

04 맺는말

이번 국제 콜로퀴엄의 특징은 사전에 정해진 주제별 발표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배정되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관리 분야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각국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사례와 적용기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하여 각국의 참가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한국의 발생주의 도입사례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소개,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현금주의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회계제도간의 연계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측 참석자는 한국에서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적용되는 범위와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등 한국의 회계제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동 국제 콜로퀴엄은 외국의 주요 재정관리 이슈 및 현황과 이와 관련된 회계제도 및 재정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각국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앞으로도 정부부문에 있어서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07 nasc

공지사항

김 상 노 부장 _ 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부
Tel_02.3149.7551 / e-mail_ alcaz@kicpa.or.kr

뉴스레터 구독 신청 안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에 회원가입 또는 ② 02-3149-7560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에는 국가회계관련 뉴스, 발간자료, 기준 및 법령, 세미나 및 교육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소 국가회계에 관하여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코너와 FAQ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뉴스레터, 정부회계저널, 알기 쉬운 국가회계기준 등의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국가회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 제안

국가회계제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의 [의견제안] 메뉴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NASC

VISION

국가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

전략 목표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기준의 충실한 이행 방안 마련
재무제표 공시자료 유용성 제고 방안 마련
체계적인 국가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수행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원가정보의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방안 마련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재정지표 개발
각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자료 제공

국내외 회계환경변화 대응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영국,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공공부문(지방, 공공기관) 회계환경 동향 분석 및 연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공감대 형성

NASC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기획재정부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NASC 기획재정부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 위탁운영기관 | KICPA 한국공인회계사회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00-74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8층 **Tel**_ 02.3149.7560 **Fax**_ 02.3149.7570 **Homepage**_www.nasc.or.kr

2012년 10월 31일 발행